

# 퇴직금규정

제 정 : 1992. 7. 7

1차개정 : 1996. 5.16 통상산업부장관승인

2차개정 : 1997.12. 9 통상산업부장관승인

3차개정 : 1998. 4. 3 산업자원부장관승인

4차개정 : 1998.10. 2 산업자원부장관승인

5차개정 : 1999. 1.19 산업자원부장관승인

6차개정 : 2000.11.21 산업자원부장관승인

7차개정 : 2007. 4.12 산업자원부장관승인

8차개정 : 2009. 7. 6 지식경제부장관승인

9차개정 : 2014. 3.26

10차개정 : 2014. 7.30

11차개정 : 2015.12.16

12차개정 : 2016.12.28

13차개정 : 2019. 2.20

14차개정 : 2021. 6.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사유) ① 퇴직금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단,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동별위내에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동정산 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액) ①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기준급여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중 1년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시점의 근속기간별 연간 지급율 증가분을 월할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기준급여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국외사무소(지사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재직중 퇴직하는 본국 직원의

퇴직금은 국내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④ 제1항의 기준지급율은 근속기간 1년마다 1개월분으로 한다.

제4조(근속기간) ①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외사비유학으로 휴직한 기간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외사비유학으로 휴직한 자가 복직후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중 1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

④ 제3항의 일할계산시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2조 1항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의 근속기간은 최종 정산일의 다음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삭제<2014.7.30>

제6조(형벌등에 의한 퇴직금의 감액) ①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미룬다.

제7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퇴직한 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8조(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 ① 만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까지의 잔여 기간이 1년이상인 직원이 사장이 정하는 명예퇴직자 특별퇴직기간에 명예 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준퇴직금외에 따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2. 업무상 또는 업무 이외의 비위사실 등으로 면직되는 경우

3. 징계 심의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인사관리규정 제29조에서 정한 승진제한 기간에 있는 자

4.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사장이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의 특별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해당금액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정년잔여기간 5년이하자 : 잔여기간의 1/2

2. 정년잔여기간 5년초과 10년이하자 : 1호의 기간과 5년초과 잔여기간의 1/4을 합한 기간

④ 제3항의 특별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 계산시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⑤ 제4항의 일할계산시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의 2(조기퇴직자의 특별퇴직금)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해당금액의 6월 범위내에서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심의) 제8조 및 제8조의 2에 의한 특별퇴직금 지급은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퇴직금 최저 지급액) 이 규정에 따른 퇴직금지급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제11조(퇴직연금제도) ① 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설계를 위하여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설정 · 운영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요강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6.30까지는 만15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연령이 만 50세이상이 되어 정년퇴직일 이전에 자진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기준퇴직금외에 제8조 제3항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한국수출입은행에 근무하던 자로 공사가 포괄승계한 직원에 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부 칙(1)

이 규정은 199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8조에 대한 특례) 이 규정 시행일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중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8조에 불구하고 기준퇴직금 외에 아래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하여 개별심사하여, 공사에 필요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구 분	자격요건	특별퇴직금 지급기준
일반사원	만 26세 이상(근속기간 5년이상)	퇴직당시 기준급여 × 24개월
기능직원	만 37세 이상(근속기간 5년이상)	

부 칙(4)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 ① 이 규정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개정 이전일까지의 퇴직금은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거, 정산지급한다.

부 칙(7)

- ① 이 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개정 이전일까지의 퇴직금은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거, 정산지급한다.  
다만, 부칙(3) 제2항(제8조에 의한 특례)은 시행일 이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8)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이 규정은 201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수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규정은 2019년 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이 규정은 2021년 6월 18일 부터 시행한다.